



공고 제2026-707호

# [경기 남부권] 2026년 「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 (디자인개발)

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「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3. 20.

## 경기도지사

### 1 사업 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-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신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촉진을 통한 우수 디자인 상용화 및 매출 증대

#### □ 지원내용

- **(디자인개발)** 디자인 전문회사(대학)를 활용하여 제품, 시각,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

#### □ 지원대상

- **(디자인개발)** 신청일 기준 **25개 참여시군 소재한**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**중소기업으로,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** ※ **제품디자인의 경우 공장등록기업에 한하여 지원**

[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] (건축물대장 제출)

- "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"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,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㎡미만(종업원 50인 미만)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“제조업소(시설)” 인 기업

[공장등록 인정가능 시설 및 요건](입주기업 확인서, 입주계약서 사본 등 제출)

- 창업보육센터,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
-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
- 기타 제조시설 확인자료(직접생산확인증 등) 제출이 가능한 경우

▶ 참여 시군 [25개 시군]

- 동부권(6) : 용인, 광주, 하남, 이천, 양평, 여주
  - 서부권(6) : 부천, 시흥, 광명, 군포, 의왕, 안양
  - 남부권(5) : 수원, 화성, 평택, 오산, 안성
  - 북부권(8) : 고양, 남양주, 파주, 양주, 구리, 포천, 동두천, 연천
- 공장소재지 기준으로 참여가능하며, 공장소재지가 미참여시군인 경우에 한하여 본사소재지로 신청가능  
<예시>

구분	본사 소재지	공장 소재지	신청가능 지역
시군	안성	평택	평택 (공장 기준)
	화성	안산 (미 참여)	화성 (본사 기준)

- 공장미등록기업은 본사소재지로 신청가능 (시각·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함)
- ※ 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해, 해당시군 공장등록 기업일 경우 가점 부여 (공장등록 증명서류 제출기업에 한함)

□ 주관기관 (디자인수행업체)

-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
  - ※ 과업 및 최종결과물, 비용 등 충분한 협의 후 선정, 최종선정 이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
- 주관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전국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(교)
  - 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와 지원신청 분야가 동일해야하며,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가점우대

□ 신청제외 기업

-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(2개년 이상),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
-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또는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
- 전년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지원받은 경우
- 당해연도 도내 타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
-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
- 기타 동 사업 관리지침에 명시된 지원제외 대상에 속하는 경우

**2 지원분야**

□ 지원분야

구분	내용	지원한도액	규모 (社)	기업 부담
디자인 개발	· 디자인 전문회사(도내 대학)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시각·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	시각/포장 최대 500만원, 제품 최대 1,400만원 이내	97 (남부권 21 내외)	3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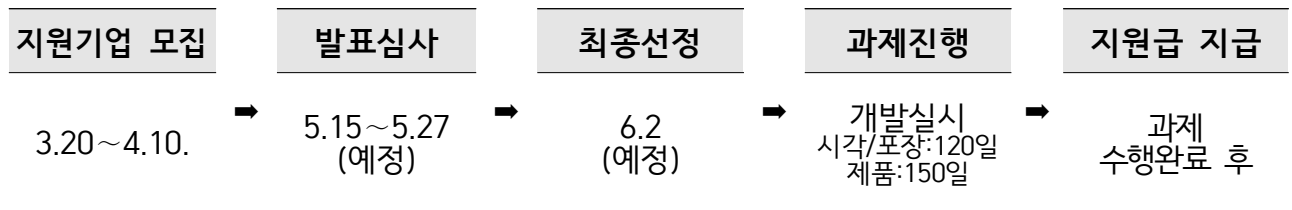
※ 참여시군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규모와 지원한도액은 변동 될 수 있음

- 디자인 전문회사(도내 대학)을 활용하여 제품디자인(기업당 최대 1,400만원) 시각/포장디자인(기업당 최대 500만원) 지원 ※ 총 개발비용의 65% 이내 지원

구분	제품디자인	시각/포장 디자인
지원한도(65%)	14백만원 이내	5백만원 이내
기업부담(35%)	7.5백만원	2.7백만원
합계(100%)	21.5백만원	7.7백만원

- 시각디자인 분야 : CI, BI
- 포장디자인 분야 : 박스 및 표면디자인, 라벨디자인, 용기디자인
- 제품디자인 분야 : 대량생산을 전제로 한 각종 제품디자인  
ex) 전기.전자, 정보통신기기 디자인/ 생활용품, 레포트 및 의료기기 디자인 등

### □ 지원절차



※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.

- ▶ 모집기간 신청접수 후 1차 서류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선정평가위원회(발표심사) 상정
- 개최일정 : 2026. 5. 15.(금) ~ 5. 27.(수), 비대면 심사 예정

### □ 유의사항

- 명확한 지원분야 및 소요비용 확정 (제품, 시각, 포장 3개 지원분야중 1개 분야 선택)
  -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65%에서 지원가능  
(A사 제품디자인개발 용역금액이 21.5백만원(VAT제외) 일 때 14백만원 지원)
  -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 디자인분야 및 금액이 일부조정 될 수 있음
- 총개발비용에서 지원결정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
- 지원결정금액은 부가가치세(VAT)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(VAT)는 기업부담
- 과업 범위
  - 제품디자인의 경우 최종결과물로 1:1 Mock-up 개발 필수  
; Scale(축소) Mock-up 개발 시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협의 및 심사자료에 必 명시
  - 포장디자인의 경우 제작시방서, 패키지 샘플 제작 필수
  - 시각디자인의 경우, 매뉴얼북 제작 필수
- 기타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별첨. 「디자인개발지원 관리지침」 참고
- 사업이행확약서 및 관리지침에 따라, 과제 완료시점에 계획 대비 성과 미달 및 부실 수행시 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

### 3

## 주관기관 확인방법

-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(디자인전문회사)을 선정
  - 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 디자인 전문회사 조회 (designfirm.kidp.or.kr )
  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신청기업에 주관기관(디자인전문회사) 추천은 별도로 하지 않음

### 4

## 신청방법

- **[접수기간] 2026. 3. 20.(금) ~ 2026. 4. 10.(금) 17시 까지**
- **[신청방법] 경기기업비서 (www.egbiz.or.kr)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**
  - ※ 사업 신청은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만 가능. 별도 이메일 통한 제출 불인정
  - ※ 마감일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서버접속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청 드리며, 마감시간 이후 접수분은 인정불가, 최종 신청(접수) 미완료 기업(신청서 작성중 등)은 불인정
  - ※ 신청현황에 따라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

### 5

## 제출서류

필수서류	선택서류(해당 시 제출)
① 디자인개발지원신청서 (서식 1) ② 사업이행확약서 (서식 2)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(국세청) ④ 공장등록증명원 (제품디자인개발 신청시 필수서류) ⑤ 2024년 재무제표 ⑥ 국세 납세증명서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고용보험가입자명부 ⑨ 중소기업확인서	① 경기도유망중소기업 ② 경기일자리우수기업 ③ 벤처기업 ④ 이노비즈 ⑤ 수출유망중소기업 ⑥ 사회적기업 ⑦ 여성기업 ⑧ ESG진단평가 우수기업 ⑨ 경기가족친화기업 일자리 좋은 인증기업 ⑩ 산단 RE100 참여기업 ⑪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기업 ⑫ 공장등록증명원 (시각·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함) ⑬ 산업재산권(특허, 디자인, 상표)

※ 발급방법 등은 공고문 붙임의 「디자인개발지원」 제출서류 리스트 참조

### 6

## 문의처

### ○ 사업내용 및 신청 방법 등 문의

참여 시군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용인, 광주, 하남, 이천, 양평, 여주	동부거점센터	박정은 대리 왕세빈 대리	031-830-8563 031-830-8567
부천, 시흥, 광명, 군포, 의왕, 안양	서부거점센터	이창권 차장	070-7116-4815
<b>수원, 화성, 평택, 오산, 안성</b>	<b>남부거점센터</b>	<b>김민진 대리</b>	<b>031-672-3590</b>
고양, 남양주, 파주, 양주, 구리, 포천, 동두천, 연천	북부거점센터	안혜진 대리 윤정우 과장	031-850-7128 031-850-7124

- **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 관련 문의 (회원가입, 온라인 신청, 파일업로드 오류 등)**
  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(Tel. 031-259-6299)

## 7

###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

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[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]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.
  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  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  -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  -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